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고단3390 판결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모욕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2고단3390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1.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욕을 하고, 다른 환자들을 계속 노 려보며 욕설을 하고, 스스로 링거바늘을 뽑더니 응급실을 나가 내과 진료실 앞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다른 환자들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게 하고, 간호사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등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2.경부터 2012. 6. 11.경까지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진료업무 등에 관한 간호사 E등 D병원 소속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7. 13:22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거리 앞에서, 사실은 119 구조대에 출동해 줄 것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설악 119지역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후송해 달라고 구조요청 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I에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여 I이 되돌아가도록 해 허위 신고 내지 장난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소방관의 구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설악 119지역대 소방 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4.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공중보건 의사인 피해자 L(29세, 남)에게 "씨발 개새끼들 쌍놈"이라고 반말과 욕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겠다"며 큰소리를 질러 다른 직원 및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sub>요지</sub>[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M, N,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각 진술서
- 1. 출동 구급일지 사본
-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판사 이광영

# 미주

[1]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